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노무제공자에게도 적용하고,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1.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근로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항 등을 개선하며,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됨에 따라 정비된 법률용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근로자 및 예술인 피보험단위기간

(안 제60조의2 신설, 제104조의6제7항 및 제104조의8제2항 개정)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방식과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방식을 개편함.

나.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안 제104조의9제1항·제2항·제4항 개정 등)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 관련 사항을 정함.

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안 제10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 1)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을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로 정함.
- 2)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기준을 월 보수

80만원으로 정함.

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안 제104조의12제5항 신설)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 중 둘 이상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등(안 제104조의13 신설)

1) 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노무제공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보수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함.

2)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기여 기간의 비율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함.

3)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6천원으로 정함.

4) 노무제공자가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기기간을 소득감소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4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2주로 정함.

5)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을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하고,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정함.

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등(안 제104조의14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더하여 3개월 이상이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며,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하도록 정함.

사.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개정 등)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326호)이 '20. 5. 26. 공포, '20. 8. 28 시행됨에 따른 법률용어를 정비하고, 「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이 '21. 1. 5. 공포, '21. 7. 1 시행됨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자”란”을 “사람”이란”으로, “자”를 “사람”으로, “자를 포함한다)를”을 “사람을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란”을 “사람”이란”으로 한다.

제3조의2제6항 중 “보험료징수”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험료징수”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9조 중 “보험료징수”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의3”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의3”으로,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①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근로자·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 산식을 충족하면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 [\text{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div 180\text{일}] \leq [(\text{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div 9\text{개월}) + \{\text{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div 12\text{개월}\}]$$

② 제1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한다.
2.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둘 중 하나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4조제2호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호 및 제7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신청한 자”를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란“을 “사람”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하인 자”를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74조제1호 중 “자의 수”를 “사람의 수”로, “자의 수는”을 “사람의 수는”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는”을 “한다)은”으로 한다.

제92조 후단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93조의2 중 “제59조”를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로 한다.

제10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청기간”을 “및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 전후휴가급여 상당액 신청기간”으로 한다.

제102조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법 제76조의

2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3조 전단 중 “급여등”을 “급여등 및 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근로계약·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계약”을 “근로계약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2항의 전단 중 “근로자·예술인”을 “근로자·예술인·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하고, 같은 항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로 가입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예술인·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한다.
2. 근로자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둘 중 하나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한다.

1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2개월}]
--

제104조의8제6항제1호다목 중 “단기예술인으로서”를 “단기예술인 또는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로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문화예술용역”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제59조”를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로 한다.

마.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104조의9제1항제2호 단서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더하여”를 “통하여”로,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을 “출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및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⑤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제한 또는 반환 명령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5장의3(제104조의11부터 제104조의1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
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
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다만, 신용카드 제휴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제휴업체
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모집 업무를 하는 제휴업체 모집인은 제외
한다.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과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8.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도로화물운송업과 연관되어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배송 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에 종사하는 사람
9.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료를 받는 강사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화물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

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3.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②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의 월 보수액(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중 노무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일부터 말일까지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만원 이상일 것. 이 경우 노무제공자가 최초로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된 이후 해당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청이 없는 한 해당 월 보수액은 80만원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③ 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피보험자격상실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 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 보수액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의 월 보수액의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노무제공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노무제공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업주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 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노무제공자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정정 신

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제104조의13(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법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이하 “최종 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

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

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②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77조의8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 산식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보험자로 가입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한다.
2.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둘 중 하나

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한다.

$1 - [\text{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div 12\text{개월}] \leq [\text{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div 180\text{일}] + [\text{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div 9\text{개월}]$
--

③ 법 제77조의8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6천원을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8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 감소의 정도가 각각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4주,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2주를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2.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⑥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조의8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
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라.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마.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
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
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
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⑦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

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2.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3. 미지급급여 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 청구자”로 본다.

제104조의14(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9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 천재지변

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전 또는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3. 물가상승률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1. 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2. 법 제76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3.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4.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5.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⑤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확인·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 재심사 청구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 및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제126조 및 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나.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

부터 제1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의11을 제104조의16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3호 중 “보험료징수”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에”를 “사람에”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 중”을 각각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인정하는 자”를 각각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13호 중 “법 제75조와”를 “법 제75조, 제76조의2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3. 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제145조제2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7조(법 제77조의5 제1항 및 법 제77조의10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2의4.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

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제145조의2제1항제18호 중 “법 제75조”를 “법 제75조, 제76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3.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제145조의2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2호가목 중 “법 제77조의5제1항”을 “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으로, “법 제77조의2제3항”을 “법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77조의5제2항”을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77조의5제2항”을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77조의5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법 제77조의5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77조의5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77조의5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법 제77조의5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법 제77조의5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11 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제104조의11제2항제2호, 제104조의11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3123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 전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동일한 직종에서 동일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종전의 자영업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이전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동일한 직종에서 동일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종전의 자영업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104조의13제2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 범위) ① <u>법 제8조</u> 단 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 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 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 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 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 <u>보험료징수법</u> ”이 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 의 전부를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u>법 제8조제1</u> <u>항</u>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 ----- -----.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 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 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간 미만인 <u>자</u> ”란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u>자</u> (1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 ----- ----- ----- ----- <u>사람</u> ”이란 ----- ----- <u>사람</u> ---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2(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① ~ ⑤ (생략)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⑦ (생략)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생략)

②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

- 사람을 포함한다)을 -----.

----- 사람과 -----

② -----
----- 사람”이
란 -----
-----.

제3조의2(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

⑦ (현행과 같음)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

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① 피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
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
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보
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라 일괄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및 제29조를
적용한다.

제42조(비용 지원의 한도) ①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
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
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
1호 및 제16조의3에 따라 부담
하는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① -

사람은 -----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고
용산재보험료징수-----

-----.

제42조(비용 지원의 한도) ①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제1호 및 제16조의3-----

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 산식을 충족하면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2개월}]

② 제1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한다.

2.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둘 중 하나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 ① 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전산망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생략)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 ① (생략)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수급자격 인정의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 ① -----

----- 사람은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람이 -----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이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사람은 -----

근거가 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해당 수급자격을 인정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4조(실업인정의 특례사유)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월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자의 수를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하 “수급자격신청률”이라 한다)이 연속하여 2개월간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생략)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

제64조(실업인정의 특례사유) ---

-----.

1. (현행과 같음)
2. -----
----- 사람의 -----

3. (현행과 같음)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

----- 사람을 -----.

1. -----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
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
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
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
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
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
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
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 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에는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

----- 사람으로
서 -----

----- 신청
한 사람

2. -----

----- 사람으
로서 -----

----- 신청한 사람

3. -----

----- 사람으
로서 -----

----- 사람.

다.

4.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
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
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실
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
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해당 수급자격자의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내
에 한 번만 인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
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
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가. ~ 다. (생략)

6.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
· 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
에 따라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이 취소·변경된 자

7.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
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8.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
에 거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

-----.

4. -----

----- 사람으로서 -----

---- 사람-----

5. -----

사람

가. ~ 다. (현행과 같음)

6. -----

----- 사람

7. -----

----- 사람

8. -----

----- 사람으로서 -

의 특례를 신청한 자

9. (생 략)

제71조(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수급기간 연기 통지를 받은 자가 그 수급기간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적은 내용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

----- 신청한 사람

9. (현행과 같음)

제71조(수급기간의 연기 신청) ①

----- 사람
은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람이 -----

고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와 수급
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
격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
신고일부터 구직급여의 지급
이 끝날 때까지 직업안정기관
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
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
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
를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응하
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로
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인 자

나. ~ 마. (생 략)

2. 삭 제

3.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 기준 이하인 자

-----.

⑤ (현행과 같음)

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① -----
----- 사람이란 -----

-----.

1. -----

----- 사람으
로서 -----
----- 있는 사람
가. -----
- 사람

나. ~ 마. (현행과 같음)

3. -----

----- 이하인 사람

② ~ ④ (생략)

제74조(특별연장급여 지급) 법 제 5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자의 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수는 제외한다)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2. ~ 4. (생략)

제76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청구)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미지급급여 청구자”라 한다)는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를 사망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특별연장급여 지급) -----

-----.

1. -----
- 사람의 수-----

----- 사람
의 수는 -----

2. ~ 4.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청구) ① -----

----- 사람-----
----- 한다)은 -

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2조(준용) 법 제64조부터 법 제
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촉
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76조제1
항·제3항 및 제81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
촉진 수당”으로, “수급자격자”
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 수당액”으로 본다.

제93조의2(준용) 자영업자인 피보
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
58조, 제59조, 제61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
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
한다.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
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5조
제2호 단서에 따른 출산전후휴
가 급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2조(준용) -----

-----.

사람”으로-----
-----.

제93조의2(준용) -----

--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
조-----

-----.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
청기간의 연장 사유) -----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제102조(준용)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 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본다.

제103조(준용) 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본다.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① ~ ⑥ (생략)

⑦ 법 제77조의2제5항에 따라 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

및 법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 신청기간-----
-----.

제102조(준용) 출산전후휴가기간 (법 제76조의2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 -----.
-----.

제103조(준용) -----
----- 급여등 및 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
-----.
-----.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근로계약·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1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
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80일

③ ~ ⑤ (생 략)

⑥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
조의3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
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
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
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가.·나. (생 략)

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으
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

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둘
중 하나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만 포함하여 산정한다.

1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
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80일}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
로 한다) ÷ 12개월}]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단기예술인 또
는 법 제77조의6제2항제2

우

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신 설>

마. ~ 사. (생 략)

2. (생 략)

⑦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 제공자로서-----

라.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

마.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바. ~ 아. (현행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⑦ -----

-----.

1. -----

-----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2. 3. (생략)

제104조의9(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생략)

2.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생략)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전 또는 후를 더하

-----.

2. 3.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9(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

3. (현행과 같음)

② -----
-----.

1. -----
----- 통하여

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되,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생략)

③ (생략)

④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신설>

----- 출산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및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⑤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 설>

<신 설>

제한 또는 반환 명령에 관하여
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
으로 본다.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
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로서 같은 법 제84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사람

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
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
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
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
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
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
집인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
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
카드회원모집인. 다만, 신용카드
제휴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제휴업체와 계약을 체
결하고 회원모집 업무를 하는
제휴업체 모집인은 제외한다.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
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
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
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
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과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
람은 제외한다.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
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
검원

8.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
류에 따른 도로화물운송업과
연관되어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산업활동(배송 물품
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에 종사하는
사람

9.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와 선택을 반영하여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
규수업 이외의 방과후 학교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료를
받는 강사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
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화물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3.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②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

라 한다)와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의 월 보수액(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중 노무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일부터 말일까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만원 이상일 것. 이 경우 노무제공자가 최초로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된 이후 해당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청이 없는 한 해당 월 보수액은 80만원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③ 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피보험자격상실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 보수액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의 월 보수액의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노무제공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노무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업주가 제104조

<신 설>

의12제1항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 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노무제공자는 법 제77조의10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
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
름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정정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통
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문화예술용
역 관련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
한다.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

<신 설>

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제104조의13(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등) ① 법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이하 “최종 계약”이

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
도 같은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
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
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
한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
소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
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
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
액의 월평균금액[최종 계
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
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
제공계약(계약 기간이 1개
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
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

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
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
수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
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②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
4개월 동안 근로자·예술인·노
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
77조의8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
위기간은 다음 산식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보험자로 가입
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
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한다.

2..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
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
둘 중 하나의 피보험 단위기간
에만 포함하여 산정한다.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2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
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80일]+[예
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
다) ÷ 9개월]

③ 법 제77조의8제5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
만6천원을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8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 감
소의 정도가 각각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는 4주,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
에는 2주를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산정한다.

1.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
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2.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
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
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
간으로 산정

⑥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조의8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라.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

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마.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
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
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
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
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
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소득세법」, 「부가가치
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휴업신고를 하
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
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
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
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
한다.

사.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
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
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
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
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 해

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⑦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2.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 중 “실업인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중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신 설>

3. 미지급급여 청구자에 대한 구
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
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
관”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
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
여 청구자”로 본다.

제104조의14(노무제공자인 피보험
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
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9제2항에 따라 노무제
공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
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
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
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 천재지변

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

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

나 형의 집행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전 또는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
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월
평균보수 수준

3. 물가상승률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3
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한다.

1. 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2. 법 제76조에 따른 출산전후휴
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3
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3.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신 설>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4.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5.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⑤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확인·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심사에 관하여는 제121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2.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 신청, 재심사 청구의 보정 등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3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4조 및 제128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제124조 · 제126조 및 제128조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본다.

나.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30조부터 제1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의11 (생략)	제104조의16 (현행 제104조의11과 같음)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① 법 제 8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보험료징수법</u>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 부금	3. <u>고용산재보험료징수</u> ----- ----- --
4. 법과 <u>보험료징수법</u> 에 따른 사 업이나 업무의 위탁수수료 지 급금	4. --- <u>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u>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1조(심사관의 자격) 법 제89 조에 따른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고용노동 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21조(심사관의 자격) ----- ----- ----- ----- ----- <u>사람</u> -- -----.
1. 고용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서 보험에 관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에 관련된 업무 에 1년 이상 종사한 <u>자</u>	1. ----- ----- ----- ----- ----- <u>사람</u>

2. 고용노동부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보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의 자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30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 임명)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각각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

2. -----

- 사람

3. ----- 사
람에 -----
----- 인정하는 사
람

제130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 임명) ① -----

----- 사람 중

-----.

② -----

----- 사람 중-----

령이 위촉한다. 다만, 상임위원
은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
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
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
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3. 3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
직하였던 자

4.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고용노동부장
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 사회보험 또는 고용문제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
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생략)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
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을 직업안전기관의 장에게 위임

-----.

----- 사람

-----.

1. -----

--- 있는 사람

2. -----

----- 사람

3. -----

----- 사람

4. -----

----- 인정하는

사람

5. -----

----- 인정하는 사람

③ (현행과 같음)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

한다.

1. ~ 3. 삭 제

4. ~ 12. (생 략)

13. 법 제75조와 법 제77조에 따
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
급과 지급 제한

13의2. (생 략)

<신 설>

14. ~ 26. (생 략)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생 략)

2. 삭 제

2의2.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
자격의 확인

2의3.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13. 법 제75조, 제76조의2 및 --

13의2. (현행과 같음)

13의3. 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에 대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등의 지급

14. ~ 26.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17조(법 제77조의5
제1항 및 법 제77조의10 제1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2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3. ~ 12. (생 략)

③ ~ ⑨ (생 략)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7. (생 략)

18.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 · 19의2. (생 략)

<신 설>

20. ~ 25. (생 략)

2의4.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3. ~ 12.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1. ~ 17. (현행과 같음)

18. 법 제75조,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 · 19의2. (현행과 같음)

19의3.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20. ~ 25. (현행과 같음)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2.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②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법 제77조의8, 제77조의9 및 제77조의10제2항·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u> ③·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보험기획과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연 락 처	(044) 202 - 7352 (044) 202 - 7909